

1. 개정이유

주차환경개선사업이 소진기금 → 지특회계로 회계가 이관('23년~)되고 '27년 사업 변경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조건 변경(제4조, 제20조)

- 국고보조금 보조 비율* 하향(국비 60% → 50%, 지방비 40% → 50%)

나. 우대사항 및 지원요건 정비(제5조, 제9조)

- (제5조) 사업 신청 시 우대사항(가점 부여) ①정비 및 ②추가*

* ①(정비) 지원요건이 화재공제 가입률 50% 이상으로, 우대 조건을 50 → 60%로 상향
②(추가) 건립 예정 부지를 미리 매입한 시장

- (제9조) 사업 지원요건(이해관계자 동의 비율)을 개선*하여 사업 추진력 강화

* (기준) 건립, 개보수, 이용보조 등 사업분야 무관 이해관계자 60% 이상 동의 必 →
(변경) 건립: 80% 이상 동의 必 / 개보수: 현행 60% 유지 / 이용보조: 동의 폐지

다. 현실 반영 조문 정비(제1조, 제6조, 제8조 등)

- 회계 변경, 타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

라. 기 타 : 1) 서식 개정안 별첨

2) 행정예고(2026. 5. 28. - 6. 26. 예정)

3) 행정규제 : 사전규제심사 실시 예정

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

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1항 중 “제9조제6항”을 “제9조제8항”으로, “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60%”를 “50%”로, “40%”를 “50%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선정한”을 “선정한 인구감소지역 및”으로, “70%”를 “60%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80%”를 “70%”로 한다.

제5조제4호 중 “50%”를 “60%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건립사업 신청 시 건립 예정 부지를 미리 매입한 시장

제6조제3항 단서 중 “최종선정협의회”를 “적격성 검토 위원회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최종선정협의회”를 “적격성 검토 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제4항 본문 중 “다른”을 “다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”로, “60% 이상의 동의”를 “동의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단, 주차장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.

제9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경우: 80%

2. 공영주차장을 개보수하는 경우: 60%

3. 주차장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: 60%

제11조 중 “제출하고,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”을 “제출”로 한다.

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3조제8항을 삭제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최종선정협의회”를 “적격성 검토 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“기획재정부장관”을 각각 “기획예산처장관”으로 한다.

제19조를 삭제한다.

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.

제19조(중전의 제20조)제3항 중 “60%”를 “50%”로 한다.

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한다.

제28조를 삭제한다.

제29조,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제27조, 제28조 및 제29조로 한다.

제27조(중전의 제29조)제6항 중 “시·도지사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”을 “시·도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”을 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”으로 한다.

제28조(중전의 제30조) 제4항 후단 중 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”를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